

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3(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) ①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른 사전고지를 하려는 자는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.

1. 발전사업의 명칭, 위치 및 면적
2.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(설비용량, 사업개시예정일, 운영기간 등)
3.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(신설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를 포함한다)

② 제1항에 따라 사전고지를 시행한 자는 사전고지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전에 관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이하 이 조에서 “시·도지사 등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·도지사 등은 그 결과 및 이에 따른 의견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허가 심의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는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사업을 대상으로 법 제7조제1항 따른 허가신청 14일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인 경우는 7일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사업개시후 양도·양수의 예외)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법인이 아닌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사망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
3. 천재·지변,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로 인해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

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2(산지중간복구) ① 「산지관리법」 제39조제2항의 산지중간복구명령을 받은 자는 법 제9조제4항의 전기사업 개시신고 시 산림청장의 준공검사확인증 혹은 제5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정지명령 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림청장등이 사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, 발전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, 이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받고 「산지관리법」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를 완료한 자는 사업정지명령에 대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 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정지명령 해제신청서와 「산지관리법」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 완료(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)

를 증명하는 확인증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정지명령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⑤ 법 제31조의2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풍수해, 태풍, 한파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
2. 부지를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경우
3.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기설비의 사용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

제62조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법 제31조의2제2항의 사업정지 및 제3항의 유예 결정

별표 1의 “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18조에 따른 안전확인 표시등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를 갖추 것”을 “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표시등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 또는 안전인증표시등을 받은 콘센트(전기차 충전기의 사용 전력량 계량 및 요금부과 기능이 있어야 함)를 갖추 것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2 표의 위반행위 번호 10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처분기준	과징금금액
10의2.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12조 제1항제10의2호	사업정지 6개월	해당없음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조의3(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) ①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른 사전고지를 하려는 자는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.</u> <u>1. 발전사업의 명칭, 위치 및 면적</u> <u>2.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(설비용량, 사업개시예정일, 운영기간 등)</u> <u>3.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(신설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를 포함한다)</u>
<u><신 설></u>	<u>② 제1항에 따라 사전고지를 시행한 자는 사전고지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전에 관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이하 이 조에서 “시·도지사 등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·도지사 등은 그 결과 및 이에 따른 의견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허가 심의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.</u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③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는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사업을 대상으로 법 제7조제1항 따른 허가신청 14일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인 경우는 7일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.

제5조의2(사업개시후 양도·양수의 예외)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법인이 아닌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사망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
3. 천재·지변,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로 인해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

제19조의2(산지중간복구) ① 「산

지관리법」 제39조제2항의 산지중
간복구명령을 받은 자는 법 제9조
제4항의 전기사업 개시신고 시 산
림청장의 준공검사확인증 혹은 제
5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
업정지명령 유예신청서를 제출하
여야 한다.

②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산업
통상자원부장관은 산림청장등이
사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, 발
전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사업정지
를 명할 수 있고, 이 경우 한국전
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에 그 사
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받
고 「산지관리법」 제39조제2항에
따른 중간복구를 완료한 자는 사
업정지명령에 대한 해제를 신청할
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 해제
를 신청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는
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
업정지명령 해제신청서와 「산지
관리법」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
복구 완료(이에 따른 복구준공검
사를 포함한다)를 증명하는 확인
증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

제62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1. 가 ~
마. (생 략)

<신 설>

[별표1]

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
(제4조의2제1항 관련)

구분	등록기준		
	인력	시설	자본금
전 기 자동차 충 전 사 업	생략	○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18조에 따른 안전확인표시등 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 를 갖추 것	생략

비고

1.~3. (생 략)

관에게 정지명령 해제를 신청하여
야 한다.

⑤ 법 제31조의2제3항에서 “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
호와 같다.

1. 풍수해, 태풍, 한파 등 천재지변
이 발생한 경우

2. 부지를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복
구공사를 진행하는 경우

3.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기설
비의 사용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

제62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1. 가 ~
마. (현행과 같음)

바. 법 제31조의2제2항의 사업정지
및 제3항의 유예 결정

[별표1]

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
(제4조의2제1항 관련)

구분	등록기준		
	인력	시설	자본금
전 기 자동차 충 전 사 업	현행 과 같음	○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안전확인표시등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 또는 안전인증표시등을 받은 콘센트(전기차 충전기의 사용 전력량 계량 및 요금부과 기능이 있어야 함)를 갖출 것	현행 과 같음

비고

1.~3. (현행과 같음)

[별표1의2]

전기사업자의 위반행위별
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
(제5조의2제1항 관련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처분기준	과징금금액
<신 설>			

[별표1의2]

전기사업자의 위반행위별
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
(제5조의2제1항 관련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처분기준	과징금금액
10의2.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12조 제1항제10의2호	사업정지 6개월	해당없음